

PINEWOOD Accounting Corporation
차주(개인사업자) 안내사항

회계법인 파인우드
2024



Contents



01 Why PINWOOD ?

02 연간 세무신고 일정

03 부가가치세 안내사항

04 종합소득세 안내사항

05 Q & A

06 별도 안내사항

Why PINWOOD ?



회계법인 파인우드가 제공하는 세무기장서비스

회계법인 파인우드는 타운카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차주분들의 절세를 도와드립니다.

회계법인 파인우드는 (주)타운즈와의 MOU를 통해 타운카 차주 전용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파인우드의 세무기장 서비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통한 절세 제공

- ✓ 절세효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비용처리, 이월결손금, 4대보험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 단순경비율(모두채움), 세무플랫폼(SSEM, 삼점삼 등) 이용시 감가상각비와 같은 비용 반영이 어렵습니다.
- ✓ 회계법인 파인우드는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차주분들의 절세를 도와드립니다.

전담 회계사 및 직원 배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 가능

- ✓ 차주분들은 개인별로 각자가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다르므로 세무기장 서비스도 이에 맞춰 제공되어야 합니다
- ✓ 회계법인 파인우드는 타운카 서비스 관련 전담 회계사와 직원을 배정하여 차주분들의 질문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세무기장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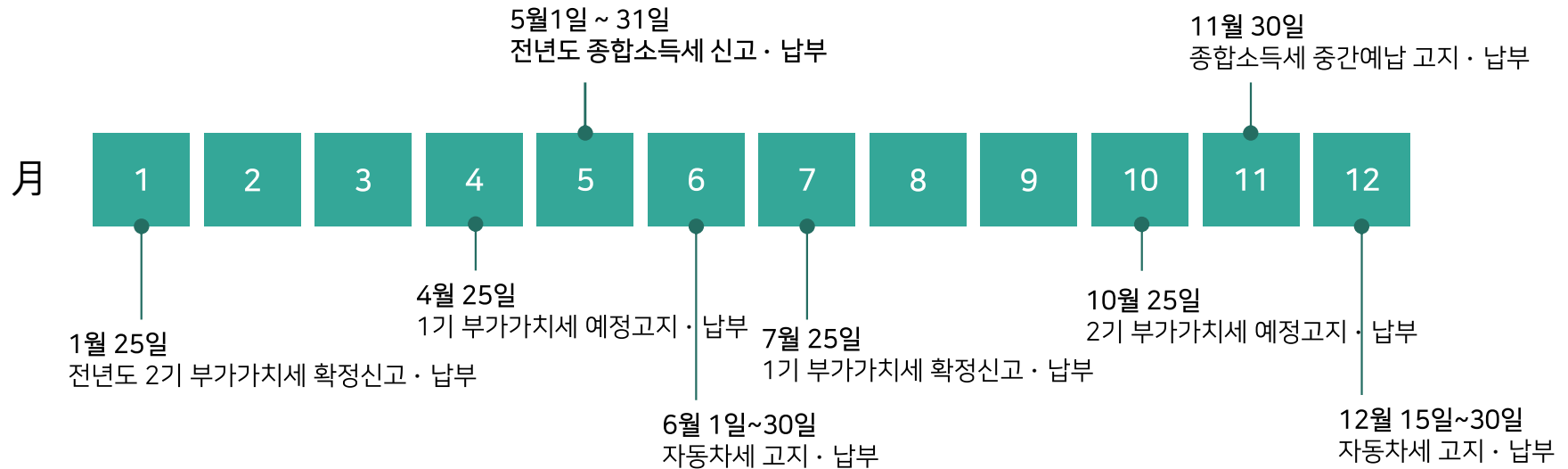
- ✓ 회계법인 파인우드는 타운즈와의 MOU를 통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안합니다

01 연간 세무신고 일정

2024년 세무신고 일정

차주의 2024년 주요 세목별 연간 세무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연간 세무신고 일정



• 본 세무신고 일정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부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02 부가가치세 안내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기한 일정

- ① 일반과세자 : 1기 확정(1~6월) > 7월 25일, 2기 확정(7~12월) > 다음 년도 1월 25일
타운카 차주는 모두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액 산출 및 증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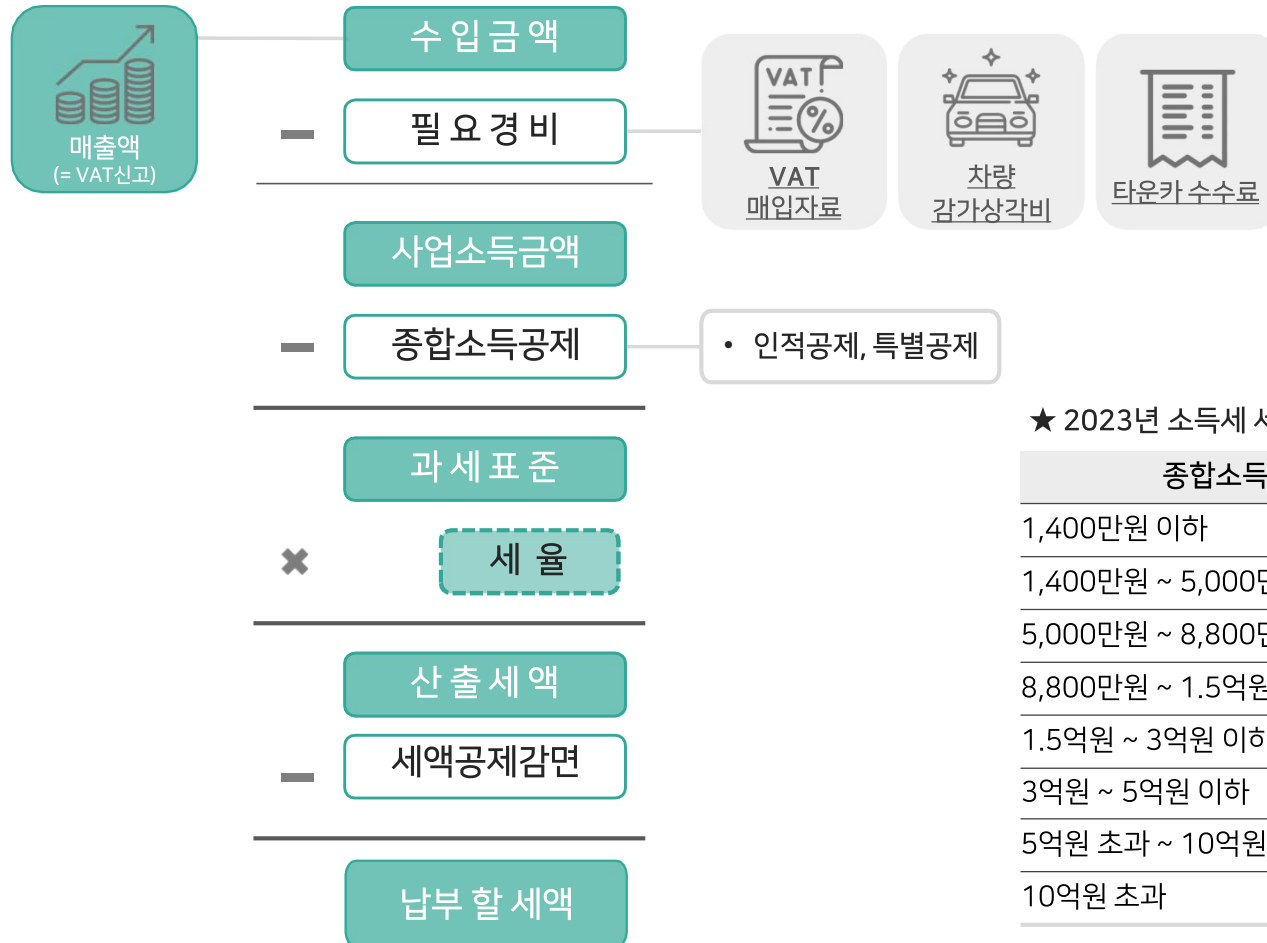
홈택스에
계좌/카드 등록은 필수!

03 종합소득세 안내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기한 일정

- ①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년도 5월 31일까지(중간 예납: 11월 30일)
타운카 사업소득과 그 외 소득(근로소득, 타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자의 산출세액 계산



★ 2023년 소득세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03 종합소득세 안내사항, 계속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사업자는 장부기장을 통해 감가상각비, 타운카 수수료 등을 비용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1. 차량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내용연수 4년 선택시 최대 차량가액의 25%/년)

① 감가상각비 비용 절세효과 : 차량가액/내용연수 x 사업사용비율 x 세율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사업소득: 매출액 - 타운카수수료 - 감가상각비 - 기장수수료 등

장부기장시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가능

단순경비율 소득신고시 적용 불가

총 누적 마일리지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율로 감가비 적용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② 감가상각비 적용을 통한 절세효과 예시

감가상각비 (과세구간, 차량가액 별 상이)	차량가액	연간 비용인정액(최대)*	절세효과(세율 15% 구간)	절세효과(세율 24% 구간)
	2천만원	500만원	75만원	120만원
	4천만원	1,000만원	150만원	240만원
	6천만원	1,500만원	225만원	360만원

*연간 감가상각비 인정액은 사업에 사용한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03 종합소득세 안내사항, 계속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사업자는 장부기장을 통해 감가상각비, 타운카 수수료 등을 비용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Case1.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과세표준 6,000만원, 타운카 매출액 300만원, 차량가액 4,000만원

<소득세 절세효과 시뮬레이션>

구분	금액	비고	효과
1. 매출액	3,000,000	타운카 매출액(연간)	낮을수록 유리
2. 다른 소득금액(과세표준)	60,000,000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	높을수록 유리
3. 차량가액	40,000,000	4년 정액법 상각	높을수록 유리
4. 사업관련 경비(수수료 등)	1,350,000	매출액 25% + 차량가액 1.5% 가정	

구분	기장 X (추계신고)	기장 O	차주 절세효과
종합소득세 산출액	9,645,768	7,299,600	2,346,168

03 종합소득세 안내사항, 계속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사업자는 장부기장을 통해 감가상각비, 타운카 수수료 등을 비용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Case2.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과세표준 5,000만원, 타운카 매출액 700만원, 차량가액 8,699만원

<소득세 절세효과 시뮬레이션>

구분	금액	비고	효과
1. 매출액	7,000,000	타운카 매출액(연간)	낮을수록 유리
2. 다른 소득금액(과세표준)	50,000,000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	높을수록 유리
3. 차량가액	86,990,000	4년 정액법 상각	높을수록 유리
4. 사업관련 경비(수수료 등)	3,054,850	매출액 25% + 차량가액 1.5% 가정	

구분	기장 X (추계신고)	기장 O	차주 절세효과
종합소득세 산출액	7,194,792	3,926,612	3,268,180

03 종합소득세 안내사항, 계속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사업자는 장부기장을 통해 감가상각비, 타운카 수수료 등을 비용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Case3.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과세표준 3,000만원, 타운카 매출액 300만원, 차량가액 2,500만원

<소득세 절세효과 시뮬레이션>

구분	금액	비고	효과
1. 매출액	3,000,000	타운카 매출액(연간)	낮을수록 유리
2. 다른 소득금액(과세표준)	30,000,000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	높을수록 유리
3. 차량가액	25,000,000	4년 정액법 상각	높을수록 유리
4. 사업관련 경비(수수료 등)	1,125,000	매출액 25% + 차량가액 1.5% 가정	

구분	기장 X (추계신고)	기장 O	차주 절세효과
종합소득세 산출액	3,652,605	2,842,125	810,480

04 제안수수료

회계법인 파인우드 세무기장수수료

회계법인 파인우드에서 제안하는 세무기장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무기장수수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장료 및 조정료 모두 포함)

구분	금액	UNIT	합계금액	제안수수료(*)
기장수수료	₩ 25,000/월	12	₩ 300,000	₩ 300,000
결산세무조정수수료	₩ 200,000/년	1	₩ 200,000	₩ 200,000
합 계				₩ 500,000

(*) 일반적인 세무사 사무실의 기장수수료는 최저 월 7만원, 결산세무조정수수료는 최저 30만원 수준입니다. 파인우드와 타운카 세무기장 서비스 계약시 수수료는 연 1회(선납) 납부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만 신고시(차주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한 경우)

구분(*)	제안수수료	업무제공내용
1) 종합소득신고(복식부기)	₩ 300,000/년	종합소득세 신고
2) 종합소득신고(추계신고)	₩ 100,000/년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신고가 절세효과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05 Q & A

Q & A

기장대리시 자주 물어보시는 사항들과 함께 답변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Q. 사업자등록시 4대보험 납부 의무가 추가로 생기나요 ?

A.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의무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다만, 장부기장을 통해 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직원 고용이 없으면 추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던 분은 월 최소납부액의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필요시 납부예외 신청가능)

Q. 간이과세자로는 등록이 불가능 한가요?

A. 자동차대여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구입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라도 일반과세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없습니다.

05 Q & A, 계속

Q & A

기장대리시 자주 물어보시는 사항들과 함께 답변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Q. 중고차의 경우 차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타운카 등록을 위해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실제 구매가액으로 합니다. 만약 차주의 기존 차량을 타운카에 등록하는 경우 차량가액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Q. 사업관련비용 결제시 꼭 사업장 명의의 카드를 써야 하나요?

A. 사업장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업과 관련 지출 영수증의 경우 5년간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전산화가 되어 영수증을 따로 모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타 명의(가족, 직원)카드 등 사용시 추후에 사업과 관련된 경비인지 분간이 힘들며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득세 경비 처리 시 영수증 실물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소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매출이 적는데 꼭 기장해야 하나요?

구분	신고대리	파인우드 세무기장
수수료 지급	신고 건별	계약시 연 1회
제공서비스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관련 세무상담

06 별도 안내사항



별도 안내사항

신규 개인사업자 필수사항 / 홈택스 가입 및 수입동의 / 각종 구비자료 등

1. 신규 개인사업자 필수사항

- ① 사업자 등록 : 사업개시전 → 사업장 관할 세무서 등록
- ② 사업용계좌 등록 : 기존 거래계좌 이용 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 장부 기장을 위하여 통장 사본 엑셀파일로 송부

2.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가입 및 수입동의

가입시 사업용 공인인증서 사용할 것

3. 각종 구비자료

구분		세부내용
세금계산서	전자	홈택스 수입동의로 자료 수령 가능
	종이	보관 및 송부(사진)
타운카 정산서		타운카앱 마이페이지
사업용 계좌		은행 홈페이지에서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송부 가능(사본 가능)
일반 영수증		증빙서철에서 보관 및 송부
매입카드	홈택스 등록카드	홈택스에 매입(사업자) 사용카드 등록
	미등록 카드	미등록카드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보관 및 송부